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직)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